소음 ·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1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김동아·한준호·서삼석

허성무 • 민형배 • 최기상

박희승 · 임미애 · 정성호

정준호 · 김정호 · 복기왕

김우영 • 윤후덕 • 윤준병

전재수 · 정을호 · 김 유

김영호 • 이병진 • 허종식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, 등록 후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

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,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 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7호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소음 ·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음 ·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자격자의 사망・실종・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등록취소 등) 특별자치시	제43조(등록취소 등)
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	
·군수·구청장은 확인검사대	
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	
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	
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	
다. 다만, 제1호나 제2호에 해	
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	
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7
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<u><단</u>	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자격자
	<u>의 사망·실종·퇴직 또는 휴</u>
	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
	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
	한다.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